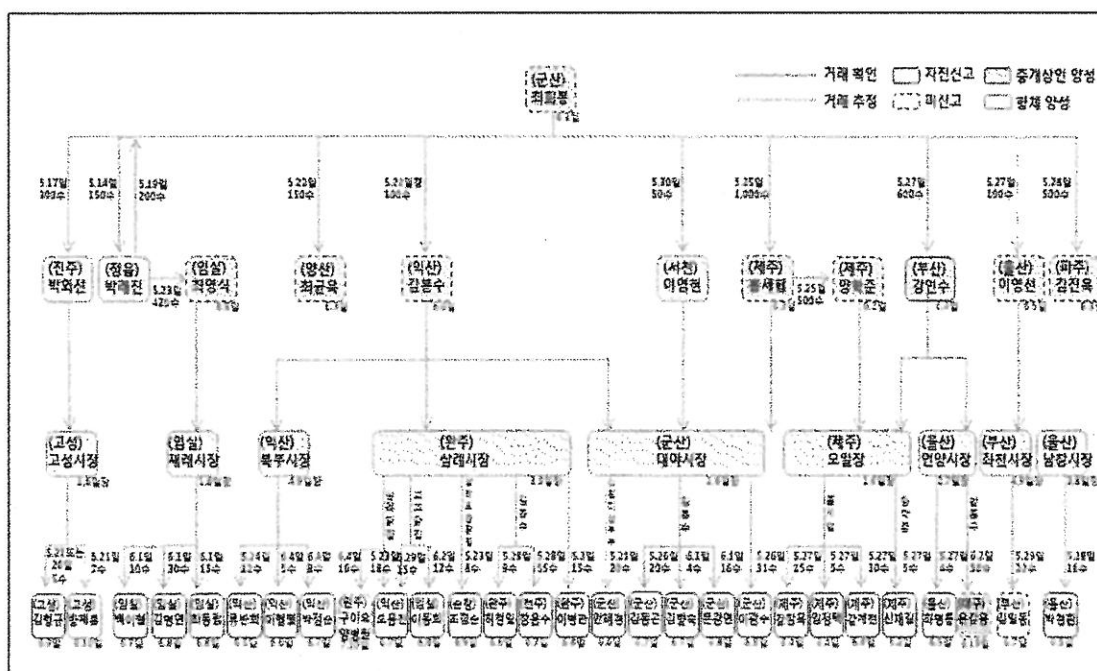

소규모 가금업체 AI 방역 강화 방안

2017. 7.



○ AI 발생 후 “사후 대처”에서 “사전 예방” 중심의 상시방역 체계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가금 방역 프로그램 마련 필요

- 미국 등 산가금 시장 관리와 관련된 방역프로그램을 응용하고, 중·대 규모 가금업체와 분리된 소규모 가금업체*에 대한 방역프로그램을 마련

* 소규모 가금업체 : 소규모 거래 농장, 가금 중개인(계류장), 운반업자, 산가금시장 등

□ 미국은 AI 예방을 위해 상업용*과 소규모 가금업체**로 각각 분리한 방역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자와 미참여자간 인센티브와 패널티 차등 적용

* 상업용 가금업체: 가금방역 개선 프로그램(NPIP; National Poultry Improvement Plan)

** 소규모 가금업체 산가금 유통관리 시스템(LBMS; Live Bird Marketing System)

< 미국 AI 예찰 프로그램 >

i) NPIP : 대규모와 소규모 고부가가치 상업용 가금을 종계 등 번식군과 생산군으로 구분하여 관리

* 대상 : 상업용 육계, 산란계, 칠면조, 종계, 원종계, 육용 물새, 취마전사용 물새, 전사용 가금, 게임용 종계 및 가금 종계장, 부화장, 사육농장, 도축장 등

ii) LBMS : 산가금시장 유통과 관련된 업자 및 업체 관리

* 대상 : 생산자, 중개인, 운반업자, 경매시장, 도매업자, 산가금시장 등

iii) 실험실 진단/연방정부 및 주정부 중심의 예찰활동

iv) 야생조류 예찰(해외 발생 사례 조사)

○ 대만은 '15년 AI 발생 이후 모든 전통시장 산가금 판매를 금지 하였으며, 홍콩의 산가금시장은 도축한 생축 판매 실시

- 홍콩은 이동전 AI검사를 의무화하고, 산가금 시장 내 생축 형태 밤샘보관 금지 및 판매 후 시장 가판대 세척소독 실시

II 그간 방역체계

□ 연간 AI 상시 예찰 추진계획을 수립, 전통시장 등 방역취약 대상*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

* 가금중개상의 차량 및 계류장, 공급농장, 기타 가금사육농가 등

○ 이번 AI 발생에 따른 대응으로 AI 긴급행동지침 등에 따라 조치하였으나, 전통시장 등 소규모 가금업계는 구체적이고 강화된 방역조치*를 행정 지시로 시달

* 역학관련 전통시장 내 판매장소 청소·세척·소독 및 계류장 잔여 가금 폐기 조치(6.8), 가축거래상인 가금·계류장 등 환경시료 AI 일제검사 추진(6.11) 등

<국내 소규모 가금업계 방역관리 현황>

	구분	현행
농가	허가·등록	·허가·등록(10㎡미만 제외)
	교육	·허가(1회/2년), 등록(1회/4년)
	기록관리	·가축사육업자 기록관리 의무 없음
	방역프로토콜	·축종별 구분없이 포괄 규정
	AI예찰검사	·오리는 도축 출하전 검사, 타 품종 검사 없음
	AI양성시대책	·농가격리, (예방적)살처분, 세척소독, 역학조사 등
거래상인	허가·등록	·미등록 가축거래상 다수 존재
	교육	·4년 주기
	기록관리	·기록관리 의무 미이행 사례 빈번
	방역프로토콜	·가금인증제(가축거래상인 44% 참여)
	AI예찰검사	·가금인증제 참여 중개상인 계류장 환경·검사(분기별)
	AI양성시대책	·유통금지, 계류장 소독, 환경검사 등
전통시장	허가·등록	·무허가·무등록 상인 존재
	교육	·4년 주기
	기록관리	·가금 수집·판매 기록 보관
	방역프로토콜	·AI 발생시 전통시장 산가금 판매 중지
	AI예찰검사	·전통시장내 가금판매소(반기·분기별) 검사
	AI양성시대책	·시장폐쇄, 살처분, 역학조사 등

Ⅲ 문제점

- 전통시장 등 방역 취약 부문에 집중·반복 점검이 필요하나, 구체적인 적용 규정 등의 부재로 관리 및 구속력이 다소 미흡
- 소규모 가금업체의 경우, 행정지시에 따른 예찰 실시로 법적인 구속력이 약하고, 정보 부족 등으로 기록 및 보고의 의무를 인지못하는 사례 빈번함
 - 방역의 1차 주체인 농가 등 축산관계자의 자율적 차단방역 강화가 보다 필요하나 일부 농가는 전용장화·의복 갈아입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도 미흡
-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에 대한 등록 및 허가는 축산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, 이들에 대한 차단방역·교육·검사 방법 등 방역관리에 대한 규정 미흡
 - 법령, 지침, 규정의 혼재로 명확한 역할 구분 및 유관기관간 긴밀한 정보 공유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이 어려움

<소규모 가금업체별 문제점>

단계	해당업체	문제점
생산	소규모농가	가금중개인·전통시장 등에 판매하는 농가 파악 어려움 질병에 대한 의식 부족으로 자율적인 방역관리가 미흡
유통	가금중개인 가금계류장	미등록자가 다수 존재하고, 거래 내역 등 기록작성 미흡 차량, 운반구 등 장비의 소독 관리가 미흡
판매	전통시장 노점판매상 가든형식당	산닭 거래 현황 파악이 어렵고, 거래내역 기록관리가 미흡 (장날거래 위주인 노점판매상의 경우 거래기록 없음) 소독시설 미설치 등으로 방역관리가 안되는 실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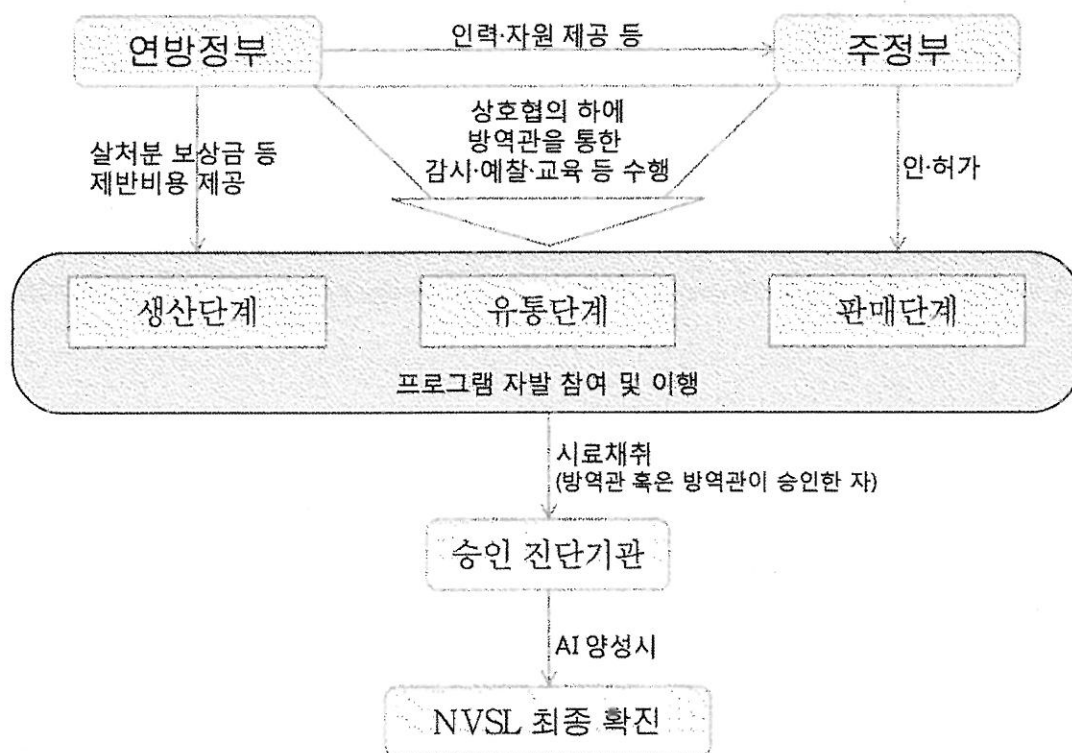
IV 미국 산가금시장 AI 예찰프로그램

□ 미국은 산가금 유통관리 프로그램(LBMS)을 생산자, 유통업자, 산가금 시장으로 분류하여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상호 협력하에 관리하고 있음

○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역할을 구분하여 주 정부는 행정 집행, 연방 정부는 주 정부에 인력, 예찰, 교육 등을 지원

-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3요소(생산자, 유통업자, 산가금시장)에 대하여 면허(등록)를 부여하여 기록관리, 차단방역 프로토콜 마련, 교육 이수 등을 요구

<미국 LBMS 운영모식도>



○ 소규모가금*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질병 신고전화 운영 및 무료 검사를 실시하는 뒷마당가금(backyard poultry) 예찰 운영

* 뒷마당가금 농장, 소규모 방목 농장, 습지 인근 사육 농장 등

< 미국 산가금 유통 시스템(LBMS) 세부 내용 >

구분		프로그램 세부내용
생산 단계	인허가	주정부로부터 고유 사업장 식별번호 부여
	교육	차단방역 교육 참석 권장
	기록 관리	- 판매 등 사업기록 보관(12개월) - 휴장 및 세척소독 기록 관리 - 검사결과 보관(12개월)
	방역 프로 토콜	- 생산관련 시설 전체 주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- 관련 시설 및 장비 등 청결 유지 - 종간 전파 차단을 위한 닭/오리 합사 금지 - 야생조류와 직·간접 노출 차단 - 이동전 검사(AI 음성) - 이력추적 가능
	AI 예찰	- 가금 출하·이동전 검사 - AI 감시군·검사완료군 구분 검사 - 무작위 점검시 가금 및 환경검사
	AI 양성시 행동 대책	- 농가격리 - 살처분 - 세척소독 - 역학조사
유통 단계	인허가	- 사업장이 위치한 주에서 면허·등록 필수 - 주정부로부터 고유 사업장 식별번호 부여(동일번호 다른 주에서도 등록 가능) - 면허·등록 전까지 방역당국으로부터 시설·기록시스템·차단방역 프로토콜 등의 점검·승인 완료
	교육	전직원 차단방역 교육 의무 이수
	기록 관리	- 가금 운송시 검사증명서 - 가금 수집·판매 기록 보관(검사증명서 사본, 반입·배달

		날짜 및 장소, 배달 가금 종류 및 수량 등 12개월 보관) • 시설 및 장비 등 세척소독 기록 관리 • 검사결과 보관(12개월)
	방역 프로 토콜	• 유통업자의 차량, 케이지, 사업장 등 관련 시설 전체 주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• 주정부 승인받은 차단방역 프로토콜의 문서화 • 생산자 혹은 다른 유통업자로부터 가금 반입시 세척소독 기록 입수 및 주정부 승인된 케이지와 세척장비 사용 • 다른 농장 등 방문시 모든 가금을 비우고 전체 관련 장비 세척소독 실시 • 유통업자는 생가금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이나 다른 생축 운반 불가
	AI 예찰	• 전체 시설·관련 장비 등 청결 및 기록 관리와 연관되어 분기별 1회 이상 무작위 점검 • 방역관 점검시 가금 및 환경검사
	AI 양성시 행동 대책	• 격리, 살처분, 세척소독, 환경검사 및 역학조사 실시 ※ 차단방역 점검에서 미흡하거나 분기검사에서 AI 양성 판정시 3개월간 매월 점검 및 검사 실시
판매 단계	인허가	• 사업장이 위치한 주에서 면허·등록 후 고유 사업장 식별번호 부여 • 프로그램 요건 및 기타 동물·공중위생 법 등 준수
	교육	• (소유주 및 관리자) 주정부나 USDA에서 제공·승인된 차단방역 및 주 법규 교육 의무 이수 • (종사자) 소유주 및 관리자를 통해 차단방역 교육 의무 이수
	기록 관리	• 판매 조류에 대한 설명·출처·기타 식별정보 등 기록 보존 의무(기록 없이 반입 불가 및 시장 유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보관)

		※ 반입조류 기록 항목: 입고일, 출처(이름), 주소, 전화번호, 색상, 종 및 유형, 판매일자, 검사증명서 등 포함 ● 교육기록(12개월 이상)
	방역 프로 토콜	● 방역당국 승인된 차단방역 프로토콜 마련하고 이에 따른 환경 및 관련 물건 등 위생 유지 ● 종사자의 방역프로토콜 준수 ● 방역프로토콜에 명시되지 않는 한 시장으로 유입된 산가금은 도축·가공 후 반출 가능 ● 정기적으로 시장폐쇄(시장비우기) 및 세척소독, 휴지기를 갖고 재 개장시 방역당국의 점검·허가를 받아야 함 (분기당 1회 이상, 회당 24시간 이상) ● 가금 폐기물은 시장이 위치한 관할당국에서 허용된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하며, 질병전파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식으로 봉인되어야 함
	AI 예찰	● 주정부의 분기별 1회 이상 무작위 검사(시료: 산가금 면봉 스왑, 폐사 혹은 병든 가금 조직, 환경시료 등)
	AI 양성시 행동 대책	● 주정부는 시장폐쇄 및 시장비우기·세척소독 실시 (추가 가금입식은 불가하나, 방역당국 담당자 허가하에 최대 5일간 시장내 재고 수매 유예 적용 가능) ● 영업 재개 전 방역당국 검열 필요, 세척소독 후 환경 검사 실시 ● AI 유전자 검출 시 바이러스 분리로 순환 바이러스 유무 확인 ● 순환 바이러스 검출시 다시 시장폐쇄 후 24시간 이내 세척소독 실시 후 재검 및 검열 ● 분기별 검사에서 순환 바이러스 검출 시 3개월 연속 매달 점검 및 검사 실시(3개월 연속 음성 결과시, 다시 정기적 분기 검사/시장폐쇄 수행) ● 시장 내/시장반입시 AI 양성 판정된 경우 역학조사

V 방역 강화 방안

① (기본 체계) 토종닭 등 소규모 가금업계의 사육·유통·판매 등 산가금 거래 단계를 포괄하는 사전예방 중심의 총괄 프로그램 도입

< 프로그램 운영 방향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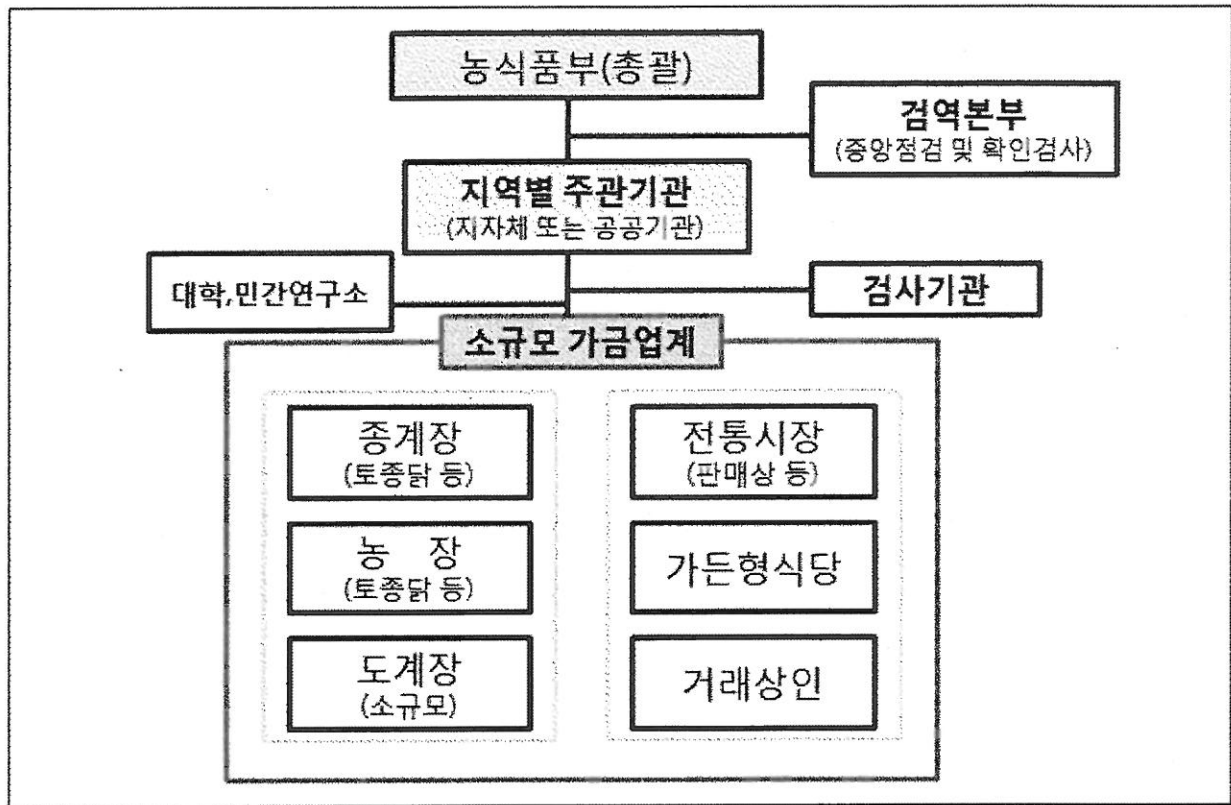
- i) 소규모 가금업계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·운영 및 의무가입 실시
 - KAHIS 등록 현행화 및 산가금 유통관리 프로그램 가입 의무화
- ii) 농장 등에서 AI 정기 자율검사 (지자체에서 별도 AI검사로 검증)
- iii) 지자체·민간중심 AI 검사 및 점검 (중앙정부는 기준과 표준매뉴얼 제공)
 - 협회·단체·명예가축방역감시원 등 민간 주도로 운영(정가·상시 자율점검의 경우 민간 주도로 하고, 무작위 불시점검의 경우 민관 합동으로 실시)
- iv) 강화된 방역의무 부과하되, 인센티브(100% 살처분 보상금 등) 제공
 - CCTV 의무 설치 및 자율 방역 의무 부여
 - 자율 방역 준수시 시설개선 등 축산정책자금 우선 지원 살처분 보상금 100% 지원 전국유통 허용 등 인센티브 제공 미준수시 거래제한 등 패널티 부여
- v) 중·대규모 가금업계와의 가금 유통 등 거래 제한* (교차오염방지)
 - 불가피한 경우 방역기관(지자체)의 승인하여 유통
- vi) 중앙정부·지자체 정기 점검 (위반시 등록 취소, 일정기간 재가입 금지)

② (관리 시스템) 농식품부가 총괄, 지역별로 시·도에서 관리

- (농식품부) 제도 운영 총괄,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·운영
 - 표준 기준 지침 마련
- (검역본부) 시·도 주관의 농장, 거래상인 등 등록·검사·인증을 점검

-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점검 결과서 및 평가서에 대한 최종 평가
- 단계별, 업종별 기준 및 표준화된 기록 및 점검 양식 작성
- 맞춤형 방역프로토콜 개발·공급 및 방역관 교육
- 유통·판매 단계 점검기록 데이터 베이스화
- (지자체·시도 방역기관) 인허가·지도·점검·검사 등 수행
 - (읍·면·동) 지역별 맞춤형 방역기준서 작성 및 해당 농가 현황 파악
 - 농장에 대한 점검기록 데이터 베이스화
- (가축방역지원본부) 시료채취, 전화 예찰, 홍보책자 제작 등 지원
- (생산자협회·단체) 명예가축방역감시원 활용, 참여 대상에 대한 방역 준수사항 이행 실태 자율 점검·지도 등 지원
 - 해당 가금농가 및 가금거래상 등 주기적 자율점검을 통해 자율방역의식 고취 하고 점검기록을 사진촬영 실시
 - 방역 교육 실시
- (대학 등 학계) 시료채취·검사 등 지원

<프로그램 관리 방안>



③ (단계별 세부 적용 내용) 단계별 교육·기록관리·방역프로토콜·AI
예찰검사·AI 양성시 행동대책 등을 구체화하여 적용

< 참여자 공통 준수사항 >

- i) 방역수칙 준수
- ii) CCTV 설치 등 강화된 시설 기준 충족
- iii) 사육두수 등 정기보고(입식·출하·폐사두수 등 즉시 보고)
- iv) 맞춤형 방역프로그램 수립·운영
- v) 정기검사를 통해 AI청정성 확인
- vi) 방역기관의 불시 점검 및 검사에 수검 의무 준수
- vii) 미(未) 참여 농가는 축산 관계자와 거래·유통 제한
- viii) 차단방역 프로그램 교육 이수

《소규모 가금업체 방역프로그램》

가입대상	■ 소규모 산가금 거래 농가(취미용 별도 규정), 도축장, 가금거래상인, 전통시장 가금판매업소, 가든형 식당(가금판매업소에 한함)
가입신청	■ 가입조건 : 사육·방역현황 정기보고, AI 정기검사, 방역 교육이수, 방역당국의 점검수검, 매월 1회 청소·소독 등
등록관리	■ 지자체(시군→시도) : 가입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등록 ※ 등록 농가, 판매업소 등에서만 살아있는 가금 유통 가능
상시점검 /정기보고	■ 자율점검 :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주기적 점검 실시 ■ 정기보고 : 가입자 → 사육수수·폐사수 등 현황 → 지자체
AI 검사	■ 검사방법 : 가입자 → 검사의뢰 → 검사기관(지자체 시험소 또는 대학 등 민간연구소) → 검사결과 통보 ■ 검사주기 : 정기 검사, 출하 전 검사 원칙
점 검	■ 점검방법 : 지자체/검역본부에서 방역프로그램 이행여부 점검 및 AI 검사(연1회 이상) ■ 위반시 처분 : 등록 취소 AI 양성시 보상금 50%삭감 (등록 취소 후 3개월간 3회 이상 AI 검사 음성시 재등록 가능)

<소규모 가금업체 방역관리 운영 개요>

	【구분】	【역할】	【담당】
생산	허가·등록	산가금 거래 모든 농가 허가·등록	농가·시군(KAHIS등록 또는 허가)·시도
	교육	허가(1회/1년), 등록(1회/2년)	지자체, 농협 등 축산관련단체 시행
	기록관리	기록관리 의무 부여(1년 보관) 입식출하 의무기록	기록관리: 해당 농가 자율점검: 명예가축방역감시원(연2회)
	방역프로 토콜	축종별 '농장차단방역기준' 정비 축산차량 등록 의무화 정기 보고	기준 지침: 농식품부 기준서 작성 및 현황파악: 읍면동 보고: 해당 농가 확인 및 승인: 시도 자율점검: 명예가축방역감시원(연2회)
	AI예찰 검사	출하 등 이동전 검사 (도축장 출하 제외)	검사의뢰: 해당농가 시료채취: 방역본부 검사 및 승인서 발급: 시도 방역기관

		정기 검사(연2회)	시료채취:방역본부 검사:시·도 방역기관 또는 대학(민간)
		도축장(월1회 이상 환경시료 및 소규모 출하 검사)	시료채취: 방역본부 검사:시·도 방역기관
		무작위 불시 점검(기록관리 및 시료채취 등 프로그램 준수 여부)	주체:시·도, 검역본부
유통	허가·등록	등록 의무화 및 계류장 정보 등록	가금거래상인·사·도 등록(고유번호 부여)
	교육	1년 주기 및 맞춤형 교육(가금관련 협회 주관교육 등) 실시	가금관련협회 관련협회 전문교육 시행
	기록관리	운송시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기록관리 의무 부여(2년간)	자율점검:명예가축방역감시원(연4회)
	방역프로 토콜	가금거래상인 인증제 등록 의무화 축산차량 등록 의무화 가금거래상의 농장간 가금 거래 중개 금지 정기 보고	기준 지침:농식품부 기준서 작성 및 현황과약 시군 보고·해당 거래상인 확인 및 승인:시·도 자율점검:명예가축방역감시원(연4회)
	AI예찰 검사	모든 가금거래상인(계류장) 시료 채취 및 환경검사(분기별)	검사의뢰:해당거래상인 시료채취:시·도 방역기관 검사:시·도 방역기관 또는 대학(민간)
		무작위 불시 점검(기록관리 및 시료채취 등 프로그램 준수 여부)	주체:시·도, 검역본부
판매	허가·등록	가금을 거래하는 판매소, 가든형 식당, 노점판매상 등록 의무화	가금거래상인·사·군 등록·사·도(고유번호 부여)
	교육	2년주기 및 맞춤형 교육 실시	지자체, 농협 등 축산관련단체 시행
	기록관리	가금 수집 판매 기록 보관(2년간)	기록관리:해당 업체 또는 종사자 자율점검:명예가축방역감시원(연4회)
	방역프로 토콜	정기적 시장비우기 실시 (24시간이상/분기별) 정기보고	기준 지침:농식품부 기준서 작성 및 현황과약 시군 보고·해당 거래상인 확인 및 승인:시·도 자율점검:명예가축방역감시원(연4회)
	AI예찰 검사	전통시장내 가금판매소 검사(분기별) 가든형식당 연1회 검사	검사의뢰:해당 판매소 등 시료채취:시·도 방역기관 검사:시·도 방역기관 또는 대학(민간)
		무작위 불시 점검(기록관리 및 시료채취 등 프로그램 준수 여부)	주체:시·도, 검역본부

※ 민간 주도 운영: 명예가축방역감시원(협회, 단체) 등을 통한 자율적인 방역준수사항
이행 실태 점검·지도 확대, 시료채취·검사 등 민간(대학 등) 이양 검토

1) 생산 단계

□ (대상) 산가금 거래 농가(소규모 농가, 도축장)

① 허가·등록	
국내 체제	- 축산법 규정에 따라 사육면적이 50㎡ 초과하는 허가 대상 50㎡ 이하인 경우 등록(시·군·구) ※사육면적 10㎡미만 가금류 사육업 제외 - 소규모 농가 및 가든형 식당 등 산가금 판매로 직·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유통 관련 방역관리 미비 ※ 미허가·미등록 대상 농가 다수 존재로 방역상 취약
미국LBMS	허가·등록 대상(자발 참여 농가)
국내 적용 방안	
○ 모든 농가 허가·등록 -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가금 사육자에 대해 축산업으로 허가·등록을 하도록 법체제의 제도화(가전법/축산법 개정) ※(4.13대책) 축산업 등록 대상 50㎡ 이하로 확대(축산법 개정 예정, '17.10) ※(4.13대책) 지자체장에게 동절기 육용오리·토종닭 등 사육제한 명령 권한 부여 10㎡ 미만 비판매 목적 소규모 사육 가구도 KAHIS 자가 등록 실시 ‘산가금유통관리시스템’ 가입 의무화 추진 → 미가입 농가에 대해 유통·판매 금지 예정 ※ 윗마당가금(방사)·취미용·자가소비용 → 등록시 해당용도 선택 ○ 참여 농가 인센티브 - 시설 개선 등 축산정책자금 등 우선 지원, 살처분 보상금 100% 지원, 전국 유통 허용, 우선 구매 등 - 취미, 자가소비용 상시 사육 두수 10마리 이하, 혼합 사육 제한 특정기간 방사 금지 ※ (읍·면·동) 분기별 사육두수 파악 후 등록, 특별방역대책기간 방사 금지 점검 ○ 대상 및 관리 (허가·등록 신청) 해당농가 → 읍·면·동 → 시·군 → 시·도	

② 교육	
국내 체계	- 축산법 규정에 따라 축산관련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농협 등 축산관련단체 주관 가축방역관련교육 이수 ※ 허가: 1회/2년, 등록: 1회/4년 - 축산관련종사자의 낮은 차단방역 의식 및 형식적 교육과 의무교육 주기가 길어 효과 미흡
미국LBMS	차단방역 교육 참석 권장
국내 적용 방안	
○ 축산관련종사자교육 강화 (4.13대책) 이수주기 단축: 허가 1년, 등록 2년(축산법 개정 예정, '17.10) (4.13대책) 과목산shal (현행) 가축방역 3시간 → (개선) 가축방역 2시간 책임의식 1시간 (4.13대책) AI 발생농가는 방역교육 이수 후, 재입식 허용 → 방역의식·역량 제고 - 교육 대상자 특성에 맞게 생산자협회, 농협, 지자체 등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을 분담하여 맞춤형 교육 실시 ○ 대상 및 관리 (교육대상) 해당농가 (교육주체) 농협 등 축산관련 단체 등	

③ 기록관리	
국내 체계	- 축산업 무허가·미등록 농가에 대한 정보 부족 - 가축·사람·차량 등의 출입기록 작성 등 기록관리 부재 - 전통시장 등 산가금 시장으로의 유통경로 불명확 - 농장 출입시 기록의무 없음(축산법) - 가축사육업자 기록관리 의무 없음 ※ 가축사육업자 외 종축업자, 부화업자는 기록관리 의무 기 부여

미국LBMS	• 판매 등 사업기록 보관(12개월) • 휴장 및 세척소독 기록 관리 • 검사결과 보관(12개월)
국내 적용 방안	
○ 관련기록 작성·보존 의무화 • 가축·사람·차량 등 출입기록 작성 및 보존(1년간, 가전법 제17조의2) • 거래기록(입식·출하 등) 의무 작성 및 보존(2년간, AI방역실시요령 제7조제5항) • 검사증명서 보존 등(1년간, AI방역실시요령 개정) ○ 대상 및 관리 • (기록관리) 해당농가 • (자율점검) 명예가축방역감시원 등 활용, 농장 수사·정기 점검 시 기록 확인(반기별) ※ 자율점검시 기록사본 사진촬영→ 시스템 등록	

④ 방역프로토콜	
국내 체계	• 가전법 상 임상관찰요령, 사람·차량 출입 요령, 야생동물 차단방법 등 규정하고 있으나, 현장 적용 역부족 • 축산법 상 축사에 대한 정의가 없어, 가축사육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서도 축산업 허가되어 있음 • 현행 방역기준은 축종별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 • 축산법과 가전법에서 소독시설과 소독설비 설치 기준을 동시에 규정하여 혼동 소지 • 축사 표준설계도가 사양관리 중심으로 마련되어, 방역시설은 일부만 포함 • 산란노계의 도축 출하 과정에서 일부 가금농가로 재판매되어 환우 후 산란계 혹은 토종닭으로 재사육, 잔반 급여 등 방역 취약요소로 부상 • 특히 토종닭의 경우 다른 축종에 비해 유통구조가 낙후되고 전통시장 산가금 유통 등으로 인해 AI 확산 등 방역에 취약

	※ 소규모 가금 농가의 낙후된 시설 및 농가의 낮은 방역의식 등으로 인한 반복적 AI 발생
미국LBMS	● 생산관련 시설 전체 주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● 관련 시설 및 장비 등 청결 유지 ● 종간 전파 차단을 위한 닭/오리 합사 금지 ● 야생조류와 직·간접 노출 차단 ● 이동전 검사(AI 음성) ● 이력추적 가능
국내 적용 방안	
○ 산가금 판매 가금 소유자의 맞춤형 방역기준서 마련 ● 생가금 판매 시 검사 후 이동 승인(도축출하 제외); 혼합사육·계류 금지 등 ※ (예시) 닭/오리, 닭/칠면조, 오리/칠면조 등 혼합사육 금지 ※ (4.13대책) 축종별 방역시설 기준 및 행동요령 구체화로 축종별 농장 차단방역 기준 정비 예정(가전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, '17.10) → 축종별·사육형태별로 기준 마련 예정 ● 5천수 이상 토종닭 사육농가는 올인 올라웃을 위하여 상머리치기 금지 및 성별 사육 권장 ● 도축 출하용 산란계·종계(토종닭, 육계 등)의 노계 등을 가금 사육농장으로 재입식 사육 금지 의무화(가전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개정) ※ (4.13대책) 도축 출하 노계의 농장 입식·사육 금지 ● 도축 출하 외 산가금 거래시 이동승인서 발급 의무화 - 이동승인서 유효기간: 시료채취일로부터 7일(AI방역실시요령 제7조제4항) ※ (4.13대책) 출하 또는 이동 전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후 검사증명서(이동 승인서, 도축장 등 출하처 명시) 발급 후 이동 허용(AI 방역실시요령 개정) ※ (현행) 전국 닭·오리 이동승인서 발급(6.8~) → (변경) 전국 닭·오리 이동승인서 (육계 도축 출하용 제외) 및 거위·기러기 등 기타 가금류 이동시 이동승인서 발급 ● 축종별 방역 시설기준 및 행동요령 등 구체화하는 '농장차단방역기준' 정비 ※ 소가금사육시라도 농장 입구 또는 차량의 간이 또는 휴대용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● 방역시설 기준을 가전법으로 일원화 하고 대폭 강화(CCTV 설치 의무화) ※ 토종닭 농장 시설 등 육계 농장 수준으로 향상되도록 지원	

※ 토종닭 농가 매년 전국 일제 조사·점검 실시(향후 5년간) - 야생조류 침입 차단 등 방역시설 포함 축사 표준설계도 제작·보급 ○ 대상 및 관리 (방역기준서 및 보고) 읍·면·동에서 지역별 맞춤 기준 마련, 농가는 입식, 출하, 폐사 등 보고 (방역기준서 지침) 농식품부에서 지침 마련 (방역기준서 양식) 검역본부에서 업종별 표준 기준 및 기록양식 마련 (확인) 지자체로부터 농장별 맞춤 기준서 승인 필요 (자율점검) 명예가축방역감시원 등 활용, 농장 수사·정기 점검시 시행여부 확인 취미·자가소비용농가는 방역본부 반기별 전화 예찰 실시 ※ 취미·자가소비용을 제외한 전체가금 연2회 이상
--

⑤ AI 예찰검사	
국내 체계	- 가금 사육농가에서 상시예찰 계획에 따른 방역기관 중심의 예찰 실시 - 소규모 사육농가 및 소규모 생축 유통 농가에 대한 세부정보 부족 ※ 출하전 검사가 도축 출하에 한정되어있어, 생축 이동 전 검사 항목 추가 필요 - 방역취약농가 전담공무원 임상예찰 실시
미국LBMS	- 가금 출하·이동전 검사 - AI 감시군·검사완료군 구분 검사 - 무작위 점검시 가금 및 환경검사
국내 적용 방안	
○ 출하·이동 전 AI 검사 - 도축장 이외 출하시 - 닭(육계 제외, 산란계·토종닭·오골계 등 포함): 임상 및 간이검사 - 오리: 임상 및 정밀검사 - 메추리, 칠면조, 꿩 등 기타가금류: 임상 및 간이검사 - 거위·기러기: 임상 및 정밀검사	

※ 단, 출하 30일 이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, 추가 입식이 없을시 증명서 발급
(예시) 정기검사: 오리, 칠면조(분기별), 닭·기타가금류(반기별) 검사 등

○ 도축장

- 출하된 소규모 가금 및 출하차량 등 주 1회 검사 실시

○ 종계장

- 전통시장 또는 소규모 출하시 지자체 신고

○ 무작위 불시 프로그램 이행점검

○ 운영주체

- (시료채취)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
- (검사기관, 증명서 발급) 시·도 가축방역기관 또는 대학
- (점검) 시·도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

⑥ AI 양성시 행동대책

국내 체계	• 농가격리, 살처분 및 예방적 살처분, 세척소독 및 역학조사 • 도축장은 작업 및 반입 중지, 장비 및 시설 세척·소독 실시 후 환경검사 음성인 경우 해제(4.13대책)
미국LBMS	• 농가격리, 살처분, 세척소독, 역학조사 등 실시
국내 적용 방안	
○ 현행유지	

2) 유통단계

□ (대상) 가금거래상인, 중개상, 노점상인 등

① 허가·등록	
국내 체계	- 가축거래상인은 축산법에 따른 등록제 대상 ※등록 시 고유번호 부여 '15부터 전통시장 가금인증제 도입으로 가금거래상 중심의 자율방역체계 구축 ※(전통시장 가금인증제) 131인 참여 중('17.4 기준) - 미등록 가축거래상이 다수 존재하고, 가축거래상의 계류장은 가축거래상 등록시 해당 정보 제출 의무 없어 현황 파악 어려움
미국LBMS	- 사업장이 위치한 주에서 면허·등록 필수 - 주정부로부터 고유 사업장 식별번호 부여(동일번호 다른 주에서도 등록 가능) - 면허·등록 전까지 방역당국으로부터 시설·기록시스템·차단 방역 프로토콜 등의 점검·승인 완료
국내 적용 방안	
○ 등록제 현행 유지 - 미 LBMS의 고유식별번호 부여 인용(운영 방식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) - 축산차량 등록 확대 및 표시 의무화 ※(현행) 가축·사료·분뇨 운반차량 등 → (확대) 축산농가 화물차량, 인력 운송차량 등 - 가금 보관시설인 계류장에 대한 정보(위치·규모 등) 추가 등록하도록 개선(축산법 시행규칙 개정, '18) - 가금거래상이 일정규모 이상 계류장 보유시 가축사육업 허가 받아 해당 시설 요건 준수토록 제도화(일정 규모에 대한 시설 요건 신설) '산가금유통관리시스템' 가입 의무화 추진 → 미가입 농가로 부터 유통·판매 금지 예정	

○ 미등록 가축거래상 관리 강화

- 벌칙 강화 및 불법 명의 대여 등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
- 신고포상금제 등 도입으로 미등록 가축거래상 영업 방지

○ 참여자 인센티브

- AI 방역조치로 인해 생계피해를 받은 가금거래상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전국 유통 허용

※ (현행) 가축사육업자 등에 한정 → (개정) 소상공인 포함 정책자금 지원 확대

- 직업 전환 지원 및 폐업 지원 프로그램 별도 운영 검토

○ 대상 및 관리

- (허가·등록 신청) 가금거래상인 → 지자체

※ 미등록 가축거래상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(시행령 개정, '17)

② 교육

국내 체계	• 축산법 규정에 따라 축산관련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농협 등 축산관련단체 주관 가축방역관련교육 이수 ※ 등록: 1회/4년 • 축산관련종사자의 낮은 차단방역 의식 및 형식적 교육과 의무교육 주기가 길어 효과 미흡
미국LBMS	• 전직원 차단방역 교육 의무 이수

국내 적용 방안

○ 축산관련종사자교육 강화

- (4.13대책) 이수주기 단축: 등록 2년(축산법 개정 예정, '17.10)
- 교육 대상자 특성에 맞게 가금관련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문 교육과정 교육 실시

※ (현행) 가축거래상은 가축사육업, 축산차량종사자 교육과정 중 하나 선택 이수
→ (개선) 가축거래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 교육과정 운영

※ 보수교육 시간 확대: (현행) 4시간 → (확대) 6시간

○ 대상 및 관리

- (교육대상) 해당 유통관련 종사자(중개상인 등)
- (교육주체) 가금관련협회 등 전문교육단체

③ 기록관리

국내 체계	• 가금 수집·판매 기록 보관 • 교육기록 보관 ※ 기록 관리 의무 미이행 사례 빈번
미국LBMS	• 가금 운송시 검사증명서 • 가금 수집·판매 기록 보관(검사증명서 사본, 반입·배달 날짜 및 장소, 배달 가금 종류 및 수량 등 12개월 보관) • 시설 및 장비 등 세척소독 기록 관리 • 검사결과 보관(12개월)
국내 적용 방안	
○ 생가금 운송 시 검사증명서(가금류 이동승인서) 휴대 의무(전체 가금 대상) • 거래기록 보관(2년간, AI방역실시요령 제7조제5항) ※ 구입처, 수량, 검사증명서 발급번호, 판매처 등 기록 ○ 대상 및 관리 • (기록관리) 해당 유통관련 종사자의 시설·장비 세척, 거래기록 등 ※ 유통종사자 차량 및 운반구의 매 사용시 세척·소독 기록 관리 • (자율점검) 명예가축방역감시원 등 활용하여, 해당 유통관련 종사자 수시·정기 점검 시 기록 확인(분기별) ※ 점검시 기록사본 사진촬영→ 시스템 등록	

④ 방역프로토콜

국내 체계	• 전통시장 가금인증제 시행중 ※'17.4 기준, 131인 참여중 ※'17.7 기준 전체 가축거래상인 297개소, 지속적인 현행화 필요
미국LBMS	• 유통업자의 차량, 케이지, 사업장 등 관련 시설 전체 주정부

	가이드라인 준수 • 주정부 승인받은 차단방역 프로토콜의 문서화 • 생산자 혹은 다른 유통업자로부터 가금 반입시 세척소독 기록 입수 및 주정부 승인된 케이지와 세척장비 사용 • 다른 농장 등 방문시 모든 가금을 비우고 전체 관련 장비 세척소독 실시 • 유통업자는 생가금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이나 다른 생축 운반 불가
국내 적용 방안	
○ 가금 운송시 등록된 축산차량 이용으로 한정 및 축산차량 표시 의무화 → 축산차량 관리 강화(4.13대책 포함) ○ 소독설비 설치 기준 등 마련(가전법 제20조 개정) • 가금거래상의 운반용 차량 및 계류장은 휴대용 또는 간이 소독장치 설치 의무화 ※ 가금운반차량의 어리장에 대한 깃털 등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충망 설치 권장 ※ 현재 가전법 및 축산법으로 나뉘어 있는 방역·소독시설 기준을 가전법으로 일원화 예정('17.10) ○ 가축거래상의 농장 간 가금 거래 중개 금지 • 가축거래상 중개시 이동증명서 휴대 의무화 ※ 거래상의 계류장 내 보관 중인 가금은 출하전 이동증명서 발급 후 이동 ※ 노점상인은 지정된 전통시장 이외 장소 판매 금지 ○ 전통시장 가금인증제 참여 확대 • 전통시장 등에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미등록 가축거래상 영업 방지 ○ 거래 제한 • 중·대규모와 소규모 농가간 거래, 산란노계, 종계(토종닭, 육계) 노계 산가금 거래, 산란계 병아리(수컷) 거래 등 ○ 대상 및 관리 • (방역기준서 및 보고) 해당 시·군에서 맞춤 기준서 마련, 상인은 입식, 출하, 판매, 폐사 등 보고	

- (방역기준서 지침) 농식품부에서 지침 마련
 - (방역기준서 양식) 검역본부에서 업종별 표준 기준 및 기록양식 마련
 - (확인) 시·도부터 해당 유통관련 종사자 맞춤 기준서 승인
 - (자율점검) 명예가축방역감시원 등 활용, 수사·정기 점검시 시행여부 확인
- ※ 자율점검시 기록사본 사진촬영→시스템 등록

⑤ AI 예찰검사

국내 체계	• 가금인증제 참여 중개상인 환경·계류장 상시예찰(분기별) ※ 가금인증제 미참여 가금거래상인(대구)에서 '17.6 양성 확인됨에 따라, 방역관리 강화 필요
미국LBMS	• 전체 시설·관련 장비 등 청결 및 기록 관리와 연관되어 분기별 1회 이상 무작위 점검 • 방역관 점검시 가금 및 환경검사

국내 적용 방안

- 모든 가금거래상인 차량 환경검사와 해당 계류장의 AI 항원 검사(분기별)
- 무작위 불시 프로그램 이행 여부 점검
 - (시료채취) 시·도 가축방역기관
 - (검사기관, 증명서 발급) 시·도 가축방역기관 또는 대학
 - (점검) 시·도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

⑥ AI 양성시 행동대책

국내 체계	• 유통금지, 계류장 소독, 환경검사 등
미국LBMS	• 격리, 살처분, 세척소독, 환경검사 및 역학조사 실시 ※ 차단방역 점검에서 미흡하거나 분기검사에서 AI 양성 판정시 3개월간 매월 점검 및 검사 실시

국내 적용 방안

- 현행유지

3) 판매 단계

□ (대상) 전통시장 가금판매소, 가든형식당(산가금 계류장) 등

① 허가·등록	
국내 체계	- 가금거래상인은 축산법에 따른 등록제 대상 ※ 등록 시 고유번호 부여 - 노점판매상 등 파악 및 관리 어려움 -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·무등록 상인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필요
미국LBMS	- 사업장이 위치한 주에서 면허·등록 후 고유 사업장 식별번호 부여 - 프로그램 요건 및 기타 동물·공중위생 법 등 준수
국내 적용 방안	
○ 등록제 현행 유지 - 미 LBMS의 고유식별번호 부여 인용(운영 방식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) ○ 전통시장·가든형 식당 등 산가금 유통 금지를 위한 기반 조성 ‘산가금유통관리시스템’ 가입 의무화 추진 → 미가입 농가·가축거래상인 으로부터 거래 중지 예정 ○ 참여자 인센티브 - AI 방역조치로 인해 생계피해를 받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에 경영 안정자금 지원 등 ※ (현행) 가축사육업자 등에 한정 → (개정) 소상공인 포함 정책자금 지원 확대 - 직업 전환 지원 및 폐업 지원 프로그램 별도 운영 검토 ○ 대상 및 관리 (허가·등록 신청) 가금판매상 → 지자체 ※ 미등록 가축거래상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(시행령 개정, '17)	

② 교육	
국내 체계	• 축산법 규정에 따라 축산관련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농협 등 축산관련단체 주관 가축방역관련교육 이수 ※ 등록: 1회/4년 • 축산관련종사자의 낮은 차단방역 의식 및 형식적 교육과 의무교육 주기가 길어 효과 미흡
미국LBMS	• (소유주 및 관리자) 주정부나 USDA에서 제공·승인된 차단방역 및 주 법규 교육 의무 이수 • (종사자) 소유주 및 관리자를 통해 차단방역 교육 의무 이수
국내 적용 방안	
○ 축산관련종사자교육 강화 • (4.13대책) 이수주기 단축: 등록 2년(축산법 개정 예정, '17.10) • 교육 대상자 특성에 맞게 생산자협회, 농협, 지자체 등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을 분담하여 맞춤형 교육 실시 ○ 대상 및 관리 • (교육대상) 해당 가금판매 종사자 • (교육주체) 농협 등 축산관련 단체 등	

③ 기록관리	
국내 체계	• 가금 수집·판매 기록 보관 • 교육기록 보관
미국LBMS	• 판매 조류에 대한 설명·출처·기타 식별정보 등 기록 보존 의무(기록 없이 반입 불가 및 시장 유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보관) ※ 반입조류 기록 항목: 입고일, 출처(이름), 주소, 전화번호, 색상, 종 및 유형, 판매일자, 검사증명서 등 포함 • 교육기록(12개월 이상)
국내 적용 방안	

○ 현행 유지
- 가금 수집·판매기록 등 거래기록 보관(2년간, AI방역실시요령 제7조제5항) ※ 구입처, 수량, 검사증명서 발급번호 등 기록
○ 대상 및 관리
(기록관리) 해당 가금판매 종사자 (자율점검) 명예가축방역감시원 등 활용하여, 해당 가금판매 종사자 수시·정기 점검 시 기록 확인(분기별) ※ 점검시 기록사본 사진촬영→ 시스템 등록

④ 방역프로토콜	
국내 체계	- AI 발생 시 전통시장 산가금 판매 중지 ※ AI 미발생 평시 방역체계 기준 확립 필요 - 토종닭은 도계장에서 도계가 어려워 전통시장 등에서 산닭으로 유통되어 방역에 취약 ※ (토종닭 유통 현황) 연간 43백만마리 중 도계 28백만마리(68%), 산닭 유통 15백만마리(35%)
미국LBMS	- 방역당국 승인된 차단방역 프로토콜 마련하고 이에 따른 환경 및 관련 물건 등 위생 유지 - 종사자의 방역프로토콜 준수 - 방역프로토콜에 명시되지 않는 한 시장으로 유입된 산가금은 도축·가공 후 반출 가능 - 정기적으로 시장폐쇄(시장비우기) 및 세척소독, 휴지기를 갖고 재개장시 방역당국의 점검·허가를 받아야 함 (분기당 1회 이상, 회당 24시간 이상) - 가금 폐기물은 시장이 위치한 관할당국에서 허용된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하며, 질병전파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식으로 봉인되어야 함
국내 적용 방안	
○ AI 발생 시 전통시장 산가금 판매 중지 현행 유지	

- 평시 정기적 산가금 판매 중지 후 세척소독 방안 마련
 - ※시장비우기: (평시) 24시간 이상/분기별
- 5일장 등 산가금 노점상인 단속 강화
- 토종닭(산닭) 불법 도계·유통 단속 강화 및 전통시장 인근 등에 소규모 도계장 설치 추진(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개선 검토), 이동식 도계장 활용 등
 - ※(4.13대책) 표준시설 및 HACCP 모델 연구 후 소규모 도계장 설치 검토 및 추진 예정('17)
 - ※소규모 도계장 연구용역('17.7까지), 이동식 도계장 허용 근거 마련(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, '17.12), 소규모 도계장 시범사업('18) 및 확대('22까지)
- 대상 및 관리
 - (방역기준서 및 보고) 해당 시·군에서 맞춤 기준서 마련, 상인은 입식, 출하, 판매, 폐사 등 보고
 - (방역기준서 지침) 농식품부에서 지침 마련
 - (방역기준서 양식) 검역본부에서 업종별 표준 기준 및 기록양식 마련
 - (확인) 시·도부터 해당 가금판매 맞춤 기준서 승인
 - (자율점검) 명예가축방역감시원 등 활용, 수사·정기 점검시 시행여부 확인
 - ※ 자율점검시 기록사본 사진촬영→ 시스템 등록

⑤ AI 예찰검사

국내 체계	●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상시예찰(반기·분기별) ※ '16.12기준 전통시장(212개소) 가금판매소(297개소) 대상: 시장내 판매소 1개소 반기별, 2개소 이상 분기별 검사
미국LBMS	● 주정부의 분기별 1회 이상 무작위 검사(시료: 산가금 면봉 스왑, 폐사 혹은 병든 가금 조직, 환경시료 등)

국내 적용 방안

-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상시예찰 현행 유지(분기별)
- 무작위 불시 프로그램 이행 여부 점검
 - (시료채취) 시·도 방역기관
 - (검사기관) 시·도 방역기관 또는 대학

• (점검) 시·도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	
○ 가든형식당 점검 및 검사 제도화(연1회)	
※ 가든형식당('17.7 기준, 686개소): 닭 등 연1회, 오리·거위·기러기는 분기별	
⑥ AI 양성시 행동대책	
국내 체계	• 시장폐쇄, 살처분, 역학조사 등
미국LBMS	• 주정부는 시장폐쇄 및 시장비우기·세척소독 실시(추가 가금 입식은 불가하나, 방역당국 담당자 허가하에 최대 5일간 시장내 재고 수매 유예 적용 가능) • 영업 재개 전 방역당국 검열 필요, 세척소독 후 환경검사 실시 • AI 유전자 검출 시 바이러스 분리로 순환 바이러스 유무 확인 • 순환 바이러스 검출시 다시 시장폐쇄 후 24시간 이내 세척소독 실시 후 재검 및 검열 • 분기별 검사에서 순환 바이러스 검출 시 3개월 연속 매달 점검 및 검사 실시(3개월 연속 음성 결과시, 다시 정기적 분기 검사/시장폐쇄 수행) • 시장 내 혹은 시장반입시 AI 양성 판정된 경우 역학조사
국내 적용 방안	
○ 현행유지	